

2015년도 문화재위원회

제6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

- ▣ 회의일시 : 2015. 06. 18(목), 14:00 ~ 17:00
- ▣ 장 소 :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
- ▣ 출석위원 : 박경립, 이재인, 정명섭, 정은우, 홍성걸,
홍승재 (이상 6명)
- ▣ 안 건 : 총 38건
 - 심의 36건 : 원안가결 10건, 조건부가결 9건, 부결 11건, 보류 6건
 - 검토 1건 : 조건부가결 1건
 - 보고 1건 : 원안접수 1건

문 화 재 위 원 회

목 차

【심의사항】

| | | |
|----|---|----|
| 1 | 서울 홍인지문 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(허가사항 변경) | 공개 |
| 2 |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 불이문 좌·우익랑 및 담장설치(2차) | 공개 |
| 3 |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주변 템플스테이(달삼원) 건립(2차) | 공개 |
| 4 | 순천 동화사 삼층석탑 주변 요사채 증축(2차) | 공개 |
| 5 |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주변 건축물 증축(4차) | 공개 |
| 6 | 제주 관덕정 주변 방범용 CCTV 설치 | 공개 |
| 7 | (전)광주 성거사지 오층석탑 주변 노유자 및 근생 시설 신축 | 공개 |
| 8 |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단독주택 건립 | 공개 |
| 9 |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주변 병원 및 연결통로 증축 | 공개 |
| 10 |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주변 연결통로 증축 | 공개 |
| 11 |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 주변 축사 부지 조성(40-8번지 외) | 공개 |
| 12 |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 주변 축사 부지 조성(40-5번지) | 공개 |
| 13 |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| 공개 |
| 14 | 칠곡 노석리 마애불상군 주변 주민편의시설(테크) 설치 | 공개 |
| 15 | 아산 읍내동 당간지주 주변 공원 조성 | 공개 |
| 16 | 김천 갈항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단독주택 신축 | 공개 |
| 17 | 포항 보경사 원진국사비 주변 버섯재배사 신축(2차) | 공개 |
| 18 | 성주 범수사지 삼층석탑 주변 숙박시설 증축 | 공개 |
| 19 |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 숙박업소 신축 | 공개 |
| 20 |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니불좌상 및 목조광배 주변 배수관로 정비(허가사항 변경) | 공개 |
| 21 | 안동 의성김씨 종택 주변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증축(허가사항 2차 변경) | 공개 |
| 22 | 영천향교 대성전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(3차) | 공개 |
| 23 |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주변 농업인주택 신축(2차) | 공개 |

| | | |
|---------------|---|----|
| 24 | 산청 대원사 다층석탑 주변 공양간 및 다목적시설 개축(2차) | 공개 |
| 25 | 의령 보천사지 승탑 주변 태양광발전소(1호) 건립(2차) | 공개 |
| 26 | 의령 보천사지 승탑 주변 태양광발전소(2호) 건립(2차) | 공개 |
| 27 | 창녕 영산 만년교 주변 공동주택 신축 | 공개 |
| 28 | 부산 범어사 대웅전 주변 공중화장실 신축 | 공개 |
| 29 |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주변 세심각 및 화장실 신축 | 공개 |
| 30 | 괴산 보안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| 공개 |
| 31 |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주변 탄금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(2차) | 공개 |
| 32 | 울주 청송사지 삼층석탑 주변 농업용수용 지하수 개발(2차) | 공개 |
| 33 | 울주 청송사지 삼층석탑 주변 관정 개발 및 물탱크 설치 | 공개 |
| 34 | 산청 단속사지 동·서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(허가사항 변경) | 공개 |
| 35 | 완주 송광사 대웅전 주변 향로전 건립 | 공개 |
| 36 | 국가지정문화재(국보·보물)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| 공개 |
| 【검토사항】 | | |
| 37 | 국가지정문화재(국보·보물)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(안) 검토 | 공개 |
| 【보고사항】 | | |
| 38 | <p>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하남 교산동 마에약사여래좌상 주변 수종갱신 - 안성 청룡사 대웅전 주변 임도 및 배수로 정비 - 철곡 송림사 오층전탑 주변 담장 보수(허가사항 변경) -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 주변 농막설치(허가사항 변경) | 공개 |

【심의사항】

안건번호 건축 2015-06-001

1. 서울 흥인지문 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(허가사항 변경)

가. 제안사항

서울 종로구 소재 보물 「서울 흥인지문」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고자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-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
- ※ ‘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(2015.04.16) : 원안가결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 : 서울 흥인지문
 - 소재지 : 서울 종로구 종로6가 69
 - 지정일 : 1963. 01. 21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위치 : 서울 종로구 창신동 693-3
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보호구역 내

○ 사업내용 :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

| | 당초(기 허가) | 금차 변경(1차) | 비고 |
|---------------|---|---|----|
| 대지면적 | 260.8m ² | 좌동 | |
| 건축면적 (연면적) | 153.13m ² (713.70m ²) | 153.13m ² (709.95m ²) | |
| 구조 | 철근콘크리트조 | 좌동 | |
| 층수/ 최고높이 | 지하1층, 지상4층 / 14.05m | 좌동 | |

- 입면변경(창호변경, 4층 파라펫 변경, 1층 진입부 마감변경 등)

라. 지방자치단체(종로구) 의견

○ 별도 의견 없음

마. 의결사항

○ 원안가결

○ 의결정족사항

- 출석 6명 / 원안가결 6명

2.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 불이문 좌·우익랑 및 담장설치(2차)

가. 제안사항

경기 여주시 소재 보물 「여주 신륵사 조사당」 주변에 불이문 좌·우익랑 및 담장설치를 하고자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에 불이문 좌·우익랑 및 담장설치를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-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“원지형 보존”에 해당됨.
- ※ ‘15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(2015.05.21) : 보류
 - 현지조사 후 재심의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신륵사 주지
- (2) 대상문화재 : 여주 신륵사 조사당
 - 소재지 : 경기 여주시 천송동 282 신륵사
 - 지정일 : 1963. 01. 21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위치 : 경기 여주시 천송동 288-4번지 일원
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보호구역에서 109m
 - 사업내용 : 불이문 좌·우익랑 및 담장설치
 - 좌·우익랑 건립
 - 좌익랑 면적 : 62.37㎡
 - 우익랑 면적 : 86.13㎡
 - 건축양식 : 삼량가, 초익공, 맞배지붕

- 담장 설치
 - 외편 담장 : L=총30m, H=1.2m

라. 지방자치단체(여주시) 의견

- 영릉의 원찰로 사찰성격상 일주문과 불이문 등 중문구조를 갖는 것이 타당함.

마. 현지조사의견(2015.06.05)

- 신청건물은 근래에 신축된 삼문의 익랑으로 사찰 주변이 관광지화 된 점을 고려할 때, 야간의 안전관리와 동선유도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건물의 규모와 외관 그리고 삼문의 명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바. 의결사항

- 조건부가결
 - 익랑 등 규모 축소
 - 전면 화방벽 보완
 - 터파기시 관계전문가 입회
 - 상기 내용을 관계전문가 자문받아 우리청 허가
- 의결정족사항
 - 출석 6명 / 조건부가결 6명

3.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주변 템플스테이(달십원) 건립(2차)

가. 제안사항

경기 양평군 소재 보물 「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」 주변에 템플스테이(달십원) 건립을 하고자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에 템플스테이(달십원) 건립을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-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“원지형 보존”에 해당됨.
- ※ ‘15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(2015.05.21) : 보류
 - 현지조사 후 재심의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용문사 주지
- (2) 대상문화재 :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
 - 소재지 : 경기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산99-6
 - 지정일 : 1971. 07. 07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위치 : 경기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산99-6
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보호구역에서 52m
 - 사업내용 : 템플스테이(달십원) 건립
 - 템플스테이(달십원)
 - 건축면적(연면적) : 163.53m²(163.53m²)
 - 건축구조 : 한식목구조

- 층수 및 높이 : 지상1층 / 7.725m
- 석축 및 배수로 설치(L=54m, H=1.8m / L=30m, H=1.2m)

라. 지방자치단체(양평군) 의견

- 용문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공간 및 시설부족으로 인한 템플스테이 (달십원) 건립 신청

마. 현지조사의견(2015.06.05)

- 신청부지는 수림대가 잘 보존된 지역으로 신축을 위한 절성토가 커서 경관 저해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바. 의결사항

- 부결
 - 역사문화환경 저해
- 의결정족사항
 - 출석 6명 / 부결 6명

4. 순천 동화사 삼층석탑 주변 묘사채 증축(2차)

가. 제안사항

전남 순천시 소재 보물 「순천 동화사 삼층석탑」 주변에 묘사채 증축을 하고자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에 묘사채 증축을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-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.
- ※ ‘15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(2015.05.21) : 보류
 - 현지조사 후 재심의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동화사 주지
- (2) 대상문화재 : 순천 동화사 삼층석탑
 - 소재지 : 전남 순천시 별량면 대룡리 282 동화사
 - 지정일 : 1985. 01. 08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위치 : 전남 순천시 별량면 대룡리 282
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보호구역 내
 - 사업내용 : 묘사채 증축(문서보관실)
 - 기존 묘사채 배면에 정면 2칸, 측면 1칸 (18m²) 증축
 - 건축구조 : 한식목구조, 한식기와, 회벽마감
 - 층수 및 높이 : 지상1층 / 3.04m

라. 지방자치단체(순천시) 의견

- 별도의견 없음

마. 현지조사의견(2015.06.10)

- 요사 배면 날개부는 도비 지원을 받아 증축되었음.
- 본 건은 기존에 증축된 두 날개부 사이 2면에 덧대어 내부 공간을 확대하는 증축 허가 사항임. 본 사업으로 인한 해당문화재(순천 동화사 삼층석탑)와의 경관 및 보존 환경에는 특별한 영향은 미치지 않음.
- 다만 증축으로 인해 뒷마당의 공간감을 상실하는 측면은 있음.

바. 의결사항

- 조건부가결
 - 입면 등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완 조치
- 의결정족사항
 - 출석 6명 / 조건부가결 6명

5.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주변 건축물 증축(4차)

가. 제안사항

경기 용인시 소재 보물 「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」 주변에 건축물을 증축(근린생활시설)하고자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에 건축물 증축(근린생활시설)을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-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“원지형 보존”에 해당됨.
- ※ ‘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9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(2013.09.26) : 부결
 - 건물규모가 커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.
- ※ ‘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(2013.12.19) : 부결
 - 건물규모가 커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.
- ※ ‘1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(2014.05.15) : 부결
 - 건물규모가 커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.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 :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
 - 소재지 :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산110번지
 - 지정일 : 1963. 01. 21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위치 :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739번지
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보호구역에서 382m

○ 사업내용 : 근린생활시설(소매점) 증축

| 층별 | 용도 | 기준 | 1차 (‘13.09.26) | 2차 (‘13.12.19) | 3차 (‘14.05.15) | 금차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지하 1층 | 근생 (휴게음식점) | 291.97m ² | - | - | - | - |
| | 근생 (소매점) | 55.40m ² | - | - | - | - |
| 1층 | 근생 (소매점) | 22.56m ² | 65.52m ² | 93.14m ² | 118.83m ² | 118.70m ² |
| | 단독주택 | 74.33m ² | - | 4.80m ² | 5.53m ² | - |
| 2층 | 단독주택 | | 66.63m ² | 89.49m ² | 112.84m ² | - |

- 건축구조 : 철근콘크리트 구조
- 건물높이 : 기존 4.55m (변동없음.)

라. 지방자치단체(용인시) 의견

- 기 허가받아 공사 완료된 건축물의 최고높이 변경없이 지상1층의 노출된 공간에 강화유리 벽면 및 지붕과 철재난간을 증축하는 건으로 문화재와의 이격거리가 상당히 멀고 문화재로부터 가시되지 않음.
- 서봉사지 발굴조사 및 관리를 위한 기존 등산로가 739번지를 통과함에 따라 문화재 관리 동선으로 사용되었으나, 민원발생 및 등산객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시에서 우회 진입로(임도)를 개설하였음. 이에 따라 기존 문화재 진입 동선과 분리되게 되므로 본 증축 건은 문화재 주변 경관에 끼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.

마. 의결사항

- 원안가결
- 의결정족사항
 - 출석 6명 / 원안가결 6명

6. 제주 관덕정 주변 방범용 CCTV 설치

가. 제안사항

제주 제주시 소재 보물 「제주 관덕정」 주변에 방범용 CCTV 설치를 하고자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에 방범용 CCTV 설치를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-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3구역 “사적분과 심의구역”에 해당됨.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제주특별자치도지사
- (2) 대상문화재 : 제주 관덕정
 - 소재지 : 제주 제주시 삼도2동 983-1
 - 지정일 : 1963. 01. 21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위치 : 제주 제주시 삼도2동 1222-2
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보호구역 내
 - 사업내용 : 방범용 CCTV 설치
 - 철주 : 6m
 - 부착대 : 4m
 - 기타
 - 기초 굴착, 기초양카 설치, 전선 지중인입 굴착 및 복구

라. 지방자치단체(제주시) 의견

- 별도 의견 없음

마. 의결사항

- 원안가결
- 의결정족사항
 - 출석 6명 / 원안가결 6명

7. (전)광주 성거사지 오층석탑 주변 노유자 및 근생 시설 신축

가. 제안사항

광주 남구 소재 보물 「(전)광주 성거사지 오층석탑」 주변에 노유자 및 근생 시설 신축을 하고자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에 노유자 및 근생 시설 신축을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-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“최고높이 8m 이하”에 해당됨.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천주의성요한수도회
- (2) 대상문화재 : (전)광주 성거사지 오층석탑
 - 소재지 : 광주 남구 구동 16-2
 - 지정일 : 1963. 01. 21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위치 : 광주 남구 서동 145-2 외 1필지
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보호구역에서 133m
 - 사업내용 : 노유자시설(노인및사회복지시설) 및 근생(제조업소)시설 신축
 - 대지면적 : 1,039㎡
 - 건축면적(연면적) : 532.94㎡(1,496.74㎡)
 - 건축구조 : 철근콘크리트조
 - 층수 및 높이 : 지하1층, 지상2층 / 12.9m

라. 지방자치단체(남구) 의견

- 문화재에 영향 없을 것으로 판단됨

마. 의결사항

- 원안가결
- 의결정족사항
 - 출석 6명 / 원안가결 6명

8.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단독주택 건립

가. 제안사항

인천 강화군 소재 보물 「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」 주변에 단독주택 건립을 하고자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 건립을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-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“원지형 보존”에 해당됨.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 :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
 - 소재지 : 인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584
 - 지정일 : 1978. 03. 08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위치 : 인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산77 외 1필지
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보호구역에서 230m
 - 사업내용 : 단독주택 건립(총 13동)
 - 단독주택(총 13동)
 - 신청부지 : 7,168㎡
 - 건축면적(연면적) : 95.85㎡(95.85㎡) 13동
 - 건축구조 : 경량철골조
 - 층수 및 높이 : 지상1층 / 5.83m

- 자연석 석축 : 최고높이 8m
- 단지 내 도로 조성 : 766m²(콘크리트 포장)

라. 지방자치단체(강화군) 의견

- 별도의견 없음

마. 의결사항

- 부결
 - 역사문화환경 저해
- 의결정족사항
 - 출석 6명 / 부결 6명

9.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주변 병원 및 연결통로 증축

가. 제안사항

전남 나주시 소재 보물 「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」 주변에 병원 및 연결통로 증축을 하고자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에 병원 및 연결통로 증축을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-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3구역 “최고높이 11m 이하”에 해당됨.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나주종합병원
- (2) 대상문화재 :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
 - 소재지 : 전남 나주시 성북동 229-9
 - 지정일 : 1963. 01. 21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위치 : 전남 나주시 성북동 100-7 외 5필지
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보호구역에서 80m
 - 사업내용 : 병원 및 연결통로 증축

| 층별 | 기존(m ²) | 증축 후(m ²) | 증가 면적(m ²)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하1 | 831.85 | 831.85 | - |
| 1층 | 1,072.48 | 1,269.39 | 196.91 |
| 2층 | 974.48 | 1,192.10 | 196.91+20.71(연결통로) |

| 층별 | 기존(m ²) | 증축 후(m ²) | 증가 면적(m ²)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3층 | 843.08 | 1,039.99 | 196.91 |
| 4층 | 843.08 | 1,039.99 | 196.91 |
| 5층 | 843.08 | 1,039.99 | 196.91 |
| 6층 | 347.76 | 347.76 | - |
| 합계 | 5,755.81 | 6,761.07 | 1,005.26 |

※ 지상2층에서 나주의원과 연결되는 연결통로(20.71m²) 증축
 - 건물높이 : 기존 24.6m, 병원 증축부 20.4m

라. 지방자치단체(나주시) 의견

- 별도의견 없음

마. 의결사항

- 보류
 - 현지조사 후 재심의
- 의결정족사항
 - 출석 6명 / 보류 6명

10.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주변 연결통로 증축

가. 제안사항

전남 나주시 소재 보물 「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」 주변에 연결통로 증축을 하고자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에 연결통로 증축을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-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3구역 “최고높이 11m 이하”에 해당됨.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(주)엔지에이치
- (2) 대상문화재 :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
 - 소재지 : 전남 나주시 성북동 229-9
 - 지정일 : 1963. 01. 21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위치 : 전남 나주시 성북동 100-11 외 2필지
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보호구역에서 132m
 - 사업내용 : 연결통로 증축

| 층별 | 기존(m ²) | 증축 후(m ²) | 증가 면적(m ²)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1층 | 381.00 | 381.00 | - |
| 2층 | 381.00 | 408.36 | 27.36(연결통로) |
| 3층 | 381.00 | 381.00 | - |

| 층별 | 기존(m ²) | 증축 후(m ²) | 증가 면적(m ²)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4층 | 381.00 | 381.00 | - |
| 합계 | 1,524.00 | 1,551.36 | 27.36 |

※ 지상2층에서 나주병원과 연결되는 연결통로(27.36m²) 증축

라. 지방자치단체(나주시) 의견

- 별도의견 없음

마. 의결사항

- 보류
 - 현지조사 후 재심의
- 의결정족사항
 - 출석 6명 / 보류 6명

11.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 주변 축사 부지 조성(40-8번지 외)

가. 제안사항

충남 아산시 소재 보물 「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」 주변에 동.식물 관련 시설(축사) 신축을 위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에 축사 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-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”에 해당됨.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 ○ ○
- (2) 대상문화재 :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
 - 소재지 : 충남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1-1번지
 - 지정일 : 1971. 07. 07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위치 : 충남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40-8번지 외 5필지
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보호구역으로부터 407m
 - 사업내용 : 축사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
 - 부지면적 : 9,725㎡
 - 절·성토 : -11.43m ~ +9m
 - 자연석 석축 쌓기 H=5m, 법면 조성 H=3.4m ~ 15m(3단)

라. 의결사항

- 보류
 - 현지조사 후 재심의
- 의결정족사항
 - 출석 6명 / 보류 6명

12.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 주변 축사 부지 조성(40-5번지)

가. 제안사항

충남 아산시 소재 보물 「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」 주변에 동.식물 관련 시설(축사) 신축을 위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에 축사 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-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“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”에 해당됨.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 ○ ○
- (2) 대상문화재 :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
 - 소재지 : 충남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1-1번지
 - 지정일 : 1971. 07. 07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위치 : 충남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40-5번지
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보호구역으로부터 407m
 - 사업내용 : 축사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
 - 부지면적 : 9,774m²
 - 절·성토 : -5.51m ~ +7.5m
 - 2단 법면 조성 H=1.5m ~ 5.9m

라. 의결사항

- 보류
 - 현지조사 후 재심의
- 의결정족사항
 - 출석 6명 / 보류 6명

13.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

가. 제안사항

경북 영양군 소재 국보 「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」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-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“원지형 보존”에 해당됨.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 ○ ○
- (2) 대상문화재 :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
 - 소재지 : 경북 영양군 입암면 산해리 391-6
 - 지정일 : 1977. 08. 22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위치 : 경북 영양군 입암면 산해리 428
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보호구역과 연결
 - 사업내용 : 단독주택 신축
 - 대지면적 : 660㎡
 - 건축면적(연면적) : 78.95㎡(75.2㎡)
 - 건축구조 : 조적조(황토벽돌)
 - 층수 및 높이 : 지상1층 / 5.65m

라. 지방자치단체(영양군) 의견

- 별도의견 없음

마. 의결사항

- 조건부가결
 -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 입회
- 의결정족사항
 - 출석 6명 / 조건부가결 6명

14. 칠곡 노석리 마애불상군 주변 주민편의시설(데크) 설치

가. 제안사항

경북 칠곡군 소재 보물 「칠곡 노석리 마애불상군」 주변에 주민편의시설(데크)을 설치하고자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에 주민편의시설(데크)을 설치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-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“원지형 보존”에 해당됨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칠곡군수
- (2) 대상문화재 : 칠곡 노석리 마애불상군
 - 소재지 : 경북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43-2
 - 지정일 : 1979. 05. 02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위치 : 경북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43-2
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문화재로부터 약 10m
 - 사업내용 : 주민편의시설(데크 및 계단)
 - 데크 L=11.5m, B=1.5 계단 L=10.36m, B=1.5m

라. 의결사항

- 조건부가결
 -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완

○ 의결정족사항

- 출석 6명 / 조건부가결 6명

15. 아산 읍내동 당간지주 주변 공원 조성

가. 제안사항

충남 아산시 소재 보물 「아산 읍내동 당간지주」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고자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-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해당됨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아산시장
- (2) 대상문화재 : 아산 읍내동 당간지주
 - 소재지 : 충남 아산시 읍내동 255-5
 - 지정일 : 1971. 07. 07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위치 : 충남 아산시 읍내동 255-5
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보호구역 내
 - 사업내용
 - 팔각정 신축 : A=15.64m², H=7.097m
 - 조경공사 : 느티나무 이식, 소나무 5주, 모감주나무 12주, 황매화 식재 57.72m², 명자나무 식재 66.57m², 잔디식재 1,088.7m²
 - 화강석 경계석 설치

라. 의결사항

- 부결
 - 역사문화환경에 맞게 조정 필요
- 의결정족사항
 - 출석 6명 / 부결 6명

16. 김천 갈항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단독주택 신축

가. 제안사항

경북 김천시 소재 보물 「김천 갈항사지 석조여래좌상」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-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“원지형 보존”에 해당됨.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 : 김천 갈항사지 석조여래좌상
 - 소재지 : 경북 김천시 남면 오봉리 81
 - 지정일 : 1963. 01. 21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위치 : 경북 김천시 남면 오봉리 81
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보호구역에서 150m
 - 사업내용 : 단독주택 신축
 - 건축면적 : 76.66㎡
 - 연면적 : 76.66㎡
 - 건축구조 : 경량철골구조
 - 층수 및 높이 : 지상1층, 4.8m

라. 지방자치단체(김천시) 의견

- 별도의견 없음

마. 의결사항

- 보류
 - 현지조사 후 재심의
- 의결정족사항
 - 출석 6명 / 보류 6명

17. 포항 보경사 원진국사비 주변 버섯재배사 신축(2차)

가. 제안사항

경북 포항시 소재 보물 「포항 보경사 원진국사비」 주변에 버섯재배사를 신축하고자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에 버섯재배사를 신축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-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“원지형 보존”에 해당됨.
- ※ ‘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(2015.04.16) : 부결
 - 역사문화환경 저해.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보경영농조합법인
- (2) 대상문화재 : 포항 보경사 원진국사비
 - 소재지 :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
 - 지정일 : 1963. 01. 21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위치 :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13 외 3필지
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75m

○ 사업내용 : 버섯재배사 신축

| | 1차('15.04) | 금차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건축면적 | 240.74m ² | 198.94m ² | |
| 연 면 적 | 479.08m ² | 198.94m ² | |
| 건축구조 | 일반철골구조 | 일반철골구조 | |
| 층수 및 높이 | 지상2층, 11.5m | 지상1층, 5.5m | |

라. 지방자치단체(포항시) 의견

○ 별도의견 없음

마. 의결사항

○ 조건부가결

- 절·성토 최소화 등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완

○ 의결정족사항

- 출석 6명 / 조건부가결 6명

18.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 주변 숙박시설 증축

가. 제안사항

경북 성주군 소재 보물 「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」 주변에 숙박시설을 증축하고자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에 숙박시설을 증축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-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“원지형 보존”에 해당됨.

다.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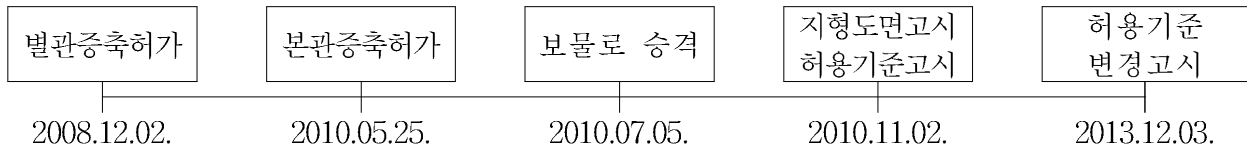
- (1) 신청인 : (주)가야호텔
- (2) 대상문화재 :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
 - 소재지 :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215-1
 - 지정일 : 2010. 07. 05.
- (3) 신청내용
 - I. 호텔 본관
 - 사업위치 :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282-4 외 2필지
(1282-14, 1282-24)
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보호구역에서 약 200m
 - II. 호텔 별관
 - 사업위치 :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282-2 외 5필지
(-3, -13, -23, 산59, 산59-1)
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보호구역에서 약 200m

○ 신청규모

| 구분 | 호텔 본동 | | | | 호텔 별관 2동(철거 후 증축) | | | |
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| 기존 | 허가현황 (증축) | 건축현황 | 불법 | 기존 (1동) | 허가현황 (증축 2동) | 건축현황 | 불법 |
| 계 | 6,235.12 | 1,492.95 | 2,456.76 | +963.81 | 561.03 | 2,437.42 | 3,547.47 | 1,110.05 |
| 지하 | 2,275.77 | - | - | | 53.07 | 894.28 | 1,335.47 | +441.19 |
| 지상1 | 1,402.77 | 497.65 | 614.19 | +116.54 | 253.98 | 521.38 | 584.44 | +63.06 |
| 지상2 | 1,278.29 | 497.65 | 614.19 | +116.54 | 253.98 | 510.88 | 575.64 | +64.76 |
| 지상3 | 1,278.29 | 497.65 | 614.19 | +116.54 | | 510.88 | 525.96 | +15.08 |
| 지상4 | | | 614.19 | +614.19 | | | 525.96 | +525.96 |
| 높이(M) | | 14.8 | 20 | +5.2 | | 15.7 | 20.132 | +4.432 |

*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전에 변경 시공함

라. 추진경과



마. 도 유형문화재 당시 허용기준(4구역) : 공통사항만 적용

- 과도한 절성토 금지, 원지형 보존, 지붕형태(우진각, 맞배 등) 등

바. 처분현황

- 2012. 01. 13. : 위법 건축행위자 고발(성주군 민원봉사과)
- 2012. 07. 27. : 건축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
 - 대표이사 문순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백만원
 - 법인 (주)가야호텔 벌금 1,500만원
- 2012. 10. 22. :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신청((주)가야호텔)
- 2012. 10. 30. :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신청 반려(무단현상변경)
- 2013. 03. 27. :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한 고발(성주군 문화관광과)

- 2013. 11. 26. :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
 - 대표이사 문순권 벌금 5백만원, (주)가야호텔 벌금 2백만원
- 2012~2015년 :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(553,095천원)

사. 지방자치단체(성주군) 의견

- 현상변경 허가없이 건축물을 증축하여 처벌된 건임

아. 의결사항

- 부결
 - 역사문화환경 저해
- 의결정족사항
 - 출석 6명 / 부결 6명

19.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 숙박업소 신축

가. 제안사항

경북 칠곡군 소재 보물 「칠곡 기성리 삼층석탑」 주변 숙박업소 신축을 위하여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-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3구역 “경사지붕 최고높이 15m(3층) 이하”에 해당됨.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 :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
 - 소재지 :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28
 - 지정일 : 1969. 06. 21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위치 :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58-5외 2필지
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보호구역에서 약 334m
 - 사업내용 : 숙박시설 신축
 - 건축면적 : 391.94㎡
 - 연면적 : 653.54㎡
 - 건축구조 : 철근콘크리트구조
 - 층수 및 높이 : 지상3층, 10.7m

라. 의결사항

- 부결
 - 현상변경 허용기준 준수
- 의결정족사항
 - 출석 6명 / 부결 5명, 원안가결 1명

20.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광배 주변 배수관로 정비(허가사항 변경)

가. 제안사항

경북 봉화군 소재 보물 「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광배」 주변 경내의 배수관로 정비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가 위치한 경내의 배수관로 정비를 위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-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“원지형 보존”에 해당됨.
- ※ ‘1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(2014.10.16) : 원안가결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축서사 주지
- (2) 대상문화재 :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광배
 - 소재지 :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1, 축서사
 - 지정일 : 1989. 04. 10.
- (3) 변경신청내용
 - 사업위치 :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1번지
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보호구역에서 20m

○ 사업내용

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|--|
| 배수공 : 배수관 27m, 암거 26m, 집수정 4개소 토공 : 흙깎이(396m ³), 터파기(430m ³), 되메우기(414m ³) 자연석축쌓기 : H=1.5~3.5m, 총L=62m | 배수공 : 배수관 54m, 암거 제외, 집수정 5개소 옹벽 추가 : H=3m, L=13m 자연석축쌓기 : H=1.5~3.5m, 총L=60m |

라. 의결사항

- 원안가결
- 의결정족사항
 - 출석 6명 / 원안가결 6명

21. 안동 의성김씨 종택 주변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증축(허가사항 2차 변경)

가. 제안사항

경북 안동시 소재 보물 「안동 의성김씨 종택」 주변에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증축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에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증축에 따른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행위가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-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“원지형 보존-기존 건축물 규모 내 개축 보수 허용”에 해당됨.
- ※ ‘1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(2014.09.25) : 조건부가결
 - 보행육교 설치는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은 신청내용대로 시행토록 함
- ※ ‘1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(2014.11.20)(1차 변경) : 원안가결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재단법인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
- (2) 대상문화재 : 안동 의성김씨 종택
 - 소재지 : 경북 안동시 임하면 경동로 1949-9(천전리)
 - 지정일 : 1967. 06. 23.
- (3) 변경신청내용
 - 사업위치 :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245-3
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문화재에서 170m

○ 사업내용

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지면적 : 161,328㎡ - 건축면적 : 총5,731.15㎡ (증축 3,613.45㎡) - 연 면 적 : 6,890.42㎡ (증축 4,048㎡) - 층수 : B1~1F - 지하보도연장 51m, 계단 30.2m, 캐노피최고높이 2.8m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지면적 : 57,538㎡ - 건축면적 : 변경없음 - 연 면 적 : 변경없음 - 층수 : 변경없음 - 지하보도연장 81m, 계단 30.2m, 캐노피최고높이 2.8m |

라. 의결사항

- 원안가결
- 의결정족사항
 - 출석 6명 / 원안가결 6명

22. 영천향교 대성전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(3차)

가. 제안사항

경북 영천시 소재 보물 「영천향교 대성전」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-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,2,4,5구역에 해당됨.
- ※ ‘15년 문화재위원회 제4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(2015.04.16) : 보류
 - 현지조사 후 재심의
- ※ ‘15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(2015.05.21) : 부결
 - 문화재주변 경관 저해 우려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영천시장
- (2) 대상문화재 : 영천향교 대성전
 - 소재지 : 경북 영천시 교촌동 46번지 1호
 - 지정일 : 1978. 04. 11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위치 : 경북 영천시 교촌동 46번지 2호
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문화재보호구역과 접한 부분이 있음

○ 사업내용 : 도시계획도로 개설

- 폭 : 20m, 길이 : 340m(92m 구간 3차로 반영)

· 토 공 : 흙깎기 4,771m³, 흙쌓기 3,260m³

· 배 수 공 : 이중벽관(D250)-584.0m, 이중벽관(D450)-573m, 이중벽관(D600)-47.0m

· 구조물공 : L형 옹벽-28m, 옹벽블록-266m (자연석 붙임 121m)

· 상수도공 : PFP관 (D80)-624m

· 포 장 공 : 표층-49a, 기층-49a, 보조기층-1,052m³, 미끄럼방지포장 760m²

· 부 대 공 : 1식

라. 의결사항

○ 조건부가결

- 옹벽 입면 및 문화재 구역 포장재료 및 블라르 설치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
자문을 받아 문화재 경관에 어울리도록 함.

○ 의결정족사항

- 출석 6명 / 조건부가결 6명

23.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주변 농업인주택 신축(2차)

가. 제안사항

전북 남원시 소재 국보 「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」주변에 농업인 주택을 신축하고자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에 농업인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-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“원지형 보존”에 해당됨.
- ※ ‘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(2015.05.21) : 부결
 -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
- (2) 대상문화재 :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
 - 소재지 : 전북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975
 - 지정일 : 1962. 12. 20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위치 : 전북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973
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보호구역에서 약 270m

- 사업내용 : 농업인주택 신축

| 구분 | 1차 | 금차 | 비고 |
|----|---|---|----|
| 규모 | - 건축면적 : 79.56㎡ - 연 면 적 : 64.26㎡ - 층 수 : 지상1층 | - 건축면적 : 52.56㎡ - 연 면 적 : 52.56㎡ | |
| 형식 | 경량철골조, 아스팔트형골, 최고높이 5.9m | 경량철골조 (목재루버마감), 경사지붕 (기와형금속강판), 최고높이 5.3m | |

라. 현지조사의견(2015.06.12)

- 부지 내 암석은 보존하도록 함.
- 지형변화는 최소화하도록 함.
- 지붕형태는 원추형에서 맞배지붕으로 단순화하도록 하고 지붕재료는 한식 기와형 강판 등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함.
- 배치도상에 진입로, 주변 배수체계 및 축대 등을 표시하도록 함.
- 백장암의 진입부에 위치하나 거리가 많이 이격되어 있어 백장암에서 인지 되지 않으므로 상기 조건이 충족될 경우 주택의 규모 등으로 볼 때 경관에 특별한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.

마. 의결사항

- 원안가결
- 의결정족사항
 - 출석 6명 / 원안가결 6명

24. 산청 대원사 다층석탑 주변 공양간 및 다목적시설 개축(2차)

가. 제안사항

경남 산청군 소재 보물 「산청 대원사 다층석탑」주변에 공양간 및 다목적 시설을 개축하고자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에 공양간 및 다목적시설을 개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-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.
- ※ ‘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(2015.05.21) : 보류
 - 현지조사 후 재심의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대원사 주지
- (2) 대상문화재 : 산청 대원사 다층석탑
 - 소재지 : 경남 산청군 삼장면 평촌 유평로 453
 - 지정일 : 1992. 01. 15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위치 : 경남 산청군 삼장면 평촌 유평로 453
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보호구역 내임

- 사업내용 : 공양간 및 다목적시설 개축

| 구분 | 현황 | 계획 | 비고 |
|-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|
| 규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면적 : 213.32㎡ - 1층 120.35㎡ (목욕탕 및 요사채) - 2층 92.97㎡(창고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면적 : 609,36㎡ - 1층 208.68㎡ (목욕탕 및 요사채) - 2층 200.34㎡(공양간) - 3층 200.34(창고) | 현황건물 철거 후 개축 |
| 형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철근콘크리트조 - 한식목조와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철근콘크리트조 *한식목조와가 형식 - 팔작지붕 - 높이 11.215m | |

라. 현지조사의견(2015.06.04)

- 신청부지는 중심사역에서 기존 건물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으나, 진입부에서는 보이는 점과 2층 건물이 연립해서 신축되는 점을 고려하여 2층 부분은 최대한 후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.

마. 의결사항

- 부결
 - 규모가 과다하여 역사문화환경 저해
- 의결정족사항
 - 출석 6명 / 부결 6명

25. 의령 보천사지 승탑 주변 태양광발전소(1호) 건립(2차)

가. 제안사항

경남 의령군 소재 보물 「의령 보천사지 승탑」 주변에 태양광발전소(1호)를 건립하고자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에 태양광발전소(1호)를 건립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-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“원지형 보존”에 해당됨.
- ※ ‘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(2015.05.21) : 부결
 -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 : 의령 보천사지 승탑
 - 소재지 : 경남 의령군 의령읍 하리 산96-1, 781-4
 - 지정일 : 1968. 12. 19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위치 : 경남 의령군 의령읍 하리 산104, 산83
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문화재로부터 약 350m

- 사업내용 : 태양광발전소(1호) 건립

| 구분 | 규모 | 비고 |
|----|---|----|
| 1차 | - 면적 : 28,118㎡ - 내용 : 1,680kWp, 4,200장 | |
| 금차 | - 면적 : 14,590㎡ - 내용 : 1,020kWp, 2,550장 | |

라. 현지조사의견(2015.06.10)

- 신청 시설물의 규모를 축소하였으나 아직도 규모가 큰 편이고, 신청부지는 산능선에 가려 직접 보이지 않으나 인근 마을과 도로변에서 바로 보이며, 사지 주변 양호한 수림대에 대규모 시설물이 들어서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마. 의결사항

- 부결
 - 역사문화환경 및 경관 저해
- 의결정족사항
 - 출석 6명 / 부결 6명

26. 의령 보천사지 승탑 주변 태양광발전소(2호) 건립(2차)

가. 제안사항

경남 의령군 소재 보물 「의령 보천사지 승탑」 주변에 태양광발전소(2호)를 건립하고자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에 태양광발전소(2호)를 건립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- 일부 부지가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“원지형 보존”에 해당됨.
- ※ ‘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(2015.05.21) : 부결
 -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 : 의령 보천사지 승탑
 - 소재지 : 경남 의령군 의령읍 하리 산96-1, 781-4
 - 지정일 : 1968. 12. 19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위치 : 경남 의령군 의령읍 하리 산82
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문화재로부터 약 230m

- 사업내용 : 태양광발전소(2호) 건립

| 구분 | 규모 | 비고 |
|----|---|----|
| 1차 | - 면적 : 16,524㎡ - 내용 : 895.5kWp, 2,985장 | |
| 금차 | - 면적 : 14,570㎡ - 내용 : 918.7kWp, 2,625장 | |

라. 현지조사의견(2015.06.10)

- 신청 시설물의 규모를 축소하였으나 아직도 규모가 큰 편이고, 신청부지는 산능선에 가려 직접 보이지 않으나 인근 마을과 도로변에서 바로 보이며, 사지 주변 양호한 수림대에 대규모 시설물이 들어서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마. 의결사항

- 부결
 - 역사문화환경 및 경관 저해
- 의결정족사항
 - 출석 6명 / 부결 6명

27. 창녕 영산 만년교 주변 공동주택 신축

가. 제안사항

경남 창녕군 소재 보물 「창녕 영산 만년교」 주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-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4구역 “평지붕-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, 경사지붕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”에 해당됨.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(주)설호산업개발
- (2) 대상문화재 : 창녕 영산 만년교
 - 소재지 : 경남 창녕군 영산면 동리 434
 - 지정일 : 1972. 03. 02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위치 : 경남 창녕군 영산면 동리 271-14
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보호구역에서 91m
 - 사업내용 : 공동주택 신축
 - 건축면적 : 452.56㎡
 - 연면적 : 1,827.35㎡
 - 건축구조 : 철근콘크리트조
 - 층수 및 높이 : 지상6층 / 22.55m

라. 의결사항

○ 원안가결

○ 의결정족사항

- 출석 6명 / 원안가결 6명

28. 부산 범어사 대웅전 주변 공중화장실 신축

가. 제안사항

부산 금정구 소재 보물 「부산 범어사 대웅전」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자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-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.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금정구청장
- (2) 대상문화재 : 부산 범어사 대웅전
 - 소재지 : 부산 금정구 범어사로 250
 - 지정일 : 1963. 01. 21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위치 : 부산 금정구 범어사로 250
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문화재에서 360m
 - 사업내용 : 공중화장실 신축
 - 건축면적 : 71.68㎡
 - 연면적 : 53.71㎡
 - 건축구조 : 철근콘크리트조
 - 층수 및 높이 : 지상1층 / 5.45m

라. 현지조사의견(2015.06.10)

- 신청부지는 범어사에서 멀고 보이지 않으므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범어사 산내 암자인 청련암 인근이고 등산로 주변인 점을 고려하여 건물의 높이는 축소하고, 외관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
마. 의결사항

- 조건부가결
 - 화장실 위치 및 배치 등 전면 재설계 후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완 후 우리청 승인을 받도록 함.
- 의결정족사항
 - 출석 6명 / 조건부가결 6명

29.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주변 세심각 및 화장실 신축

가. 제안사항

강원 철원군 소재 보물 「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」 주변에 세심각 및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에 세심각 및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-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“원지형보존”에 해당됨.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도피안사 주지
- (2) 대상문화재 :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
 - 소재지 : 강원 철원군 동송읍 도피동길 23
 - 지정일 : 1963. 01. 21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위치 : 강원 철원군 동송읍 도피동길 23
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문화재에서 56m
 - 사업내용 : 세심각 및 화장실 신축
 - 건축면적 : 97.2㎡
 - 연면적 : 142.2㎡(지하층 물탱크실 제외)
 - 건축구조 : 철근콘크리트조, 전통한식기와
 - 층수 및 높이 : 지상2층 / 9.31m
 - * 1층 : 화장실 및 사무실
 - * 2층 : 세심각

라. 의결사항

- 보류
 - 현지조사 후 재심의
- 의결정족사항
 - 출석 6명 / 보류 6명

30. 괴산 보안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

가. 제안사항

충북 괴산군 소재 보물 「괴산 보안사 삼층석탑」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-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“원지형 보존”에 해당됨.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 ○ ○
- (2) 대상문화재 : 괴산 보안사 삼층석탑
 - 소재지 : 충북 괴산군 청안면 효근1길 23
 - 지정일 : 2000. 08. 04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위치 : 충북 괴산군 청안면 효근리 산65-3
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보호구역에서 178m
 - 사업내용 : 단독주택 및 창고(차고) 신축
 - 건축면적 : 125.08㎡
 - 연면적 : 120.6㎡(주택 32.4㎡, 창고 88.2㎡)
 - 건축구조 : 주택(경량철골조), 창고(철근콘크리트조)
 - 층수 및 높이 : 지상1층 주택(5.91m), 창고(4.45m)

라. 의결사항

- 조건부가결
 - 임야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함.
- 의결정족사항
 - 출석 6명 / 조건부가결 6명

31.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주변 탄금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(2차)

가. 제안사항

충북 충주시 소재 국보 「충주 탑평리 칠층석탑」 주변 탄금호에 수상레포츠타운을 조성하고자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 탄금호에 수상레포츠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-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“원지형 보존” 및 제2구역 “최고높이 7.5m(1층 이하)”에 해당됨.
- ※ ‘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(2015.05.21) : 부결
 -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충주시장
- (2) 대상문화재 :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
 - 소재지 :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탑평리 11
 - 지정일 : 1962. 12. 20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위치 :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탑평리 94-2일원
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문화재로부터 약 150m
 - 사업내용 : 탄금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
 - 사업면적 : 16,600m²(변경없음)

- 사업내용

- * 당초 : 야외수영장, 어린이 모험체험장, 주차장, 숙박시설용지 부지조성 등
- * 변경 : 야외수영장, 주차장, 어린이 수상레저체험장, 수변광장 등

<1구역>

- * 당초 : 모험체험장과 야외수영장 물놀이시설(유수풀 등) 및 휴게시설(그늘막) 계획
- * 변경 : 주차장, 수변광장

<2구역>

- * 당초 : 야외수영장(관리동포함)과 주차장, 숙박시설용지(추후사업) 부지조성 계획
기존 건물지를 활용하여 야외수영장 관리동(2층) 계획
- * 변경 : 야외수영장, 관리동(2층), 숙박시설용지(추후사업) 부지조성 계획

<세부사업계획>

- * 부지정비 : 절토 3,000m³, 성토 20,000m³, 반입토 17,000m³ (변경없음)
- * 모험체험장 : 시설물높이 7.5m 이하 (**제외**)
- * 야외수영장 : 워터 조합놀이대(높이 7.0m 내외), 부속물놀이시설(높이 3.0m 내외), 워터슬라이드 (**제외**), 수영장(풀)
- * 관리동 : 건축면적(938.31m²), 연면적(2,181.82m²), 지상2층, 지하1층, 철근콘크리트조, 높이 10m(경사지붕) (변경없음)

라. 의결사항

- 조건부가결
 - 건물의 입면 등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완
- 의결정족사항
 - 출석 6명 / 조건부가결 6명

32. 울주 청송사지 삼층석탑 주변 농업용수용 지하수 개발(2차)

가. 제안사항

울산 울주군 소재 보물 「울주 청송사지 삼층석탑」 주변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정을 개발하고자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정을 개발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-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“원지형 보존”에 해당됨
- ※ ‘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(2015.05.21) : 부결
 - 지자체 문화재위원회 절차 선행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
- (2) 대상문화재 : 울주 청송사지 삼층석탑
 - 소재지 :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 1203-1
 - 지정일 : 1963. 01. 21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위치 :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 1180-1
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문화재로부터 180m
 - 사업내용 : 관정 개발
 - 굴착깊이 : 150m
 - 굴착구경 : 200mm
 - 양수능력 : 40m³/일

라. 의결사항

- 원안가결
- 의결정족사항
 - 출석 6명 / 원안가결 6명

33. 울주 청송사지 삼층석탑 주변 관정 개발 및 물탱크 설치

가. 제안사항

울산 울주군 소재 보물 「울주 청송사지 삼층석탑」 주변에 관정 개발 및 물탱크를 설치하고자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에 관정 개발 및 물탱크를 설치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-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“원지형 보존”에 해당됨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
- (2) 대상문화재 : 울주 청송사지 삼층석탑
 - 소재지 : 울산 울주군 청량면 울리 1203-1
 - 지정일 : 1963. 01. 21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위치 : 울산 울주군 청량면 울리 1216, 1199
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문화재로부터 50~70m
 - 사업내용 : 관정 개발 및 물탱크 설치
 - 관정개발 : 굴착심도 150m, 굴착지름 200mm
 - * 관정보호시설 : 2.0m(가로)*1.5m(세로)*2.15m(높이)
 - 물탱크 : 원형스테인레스, 지름 3.9m, 높이 2.8m
 - * 기초콘크리트 : 5.3m(가로)*5.3m(세로)*0.3m(높이)

라. 의결사항

- 부결
 -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
- 의결정족사항
 - 출석 6명 / 부결 6명

34. 산청 단속사지 동·서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(허가사항 변경)

가. 제안사항

경남 산청군 소재 보물 「산청 단속사지 동·서 삼층석탑」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-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“원지형 보존”에 해당됨.
- ※ ‘14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(2014.09.25) : 부결
 -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
- ※ ‘14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(2014.11.20) : 부결
 -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
- ※ ‘15년 문화재위원회 제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(2015.02.25) : 원안가결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 : 산청 단속사지 동·서 삼층석탑
 - 소재지 : 경남 산청군 단성면 윤리 332
 - 지정일 : 1963. 01. 21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위치 : 경남 산청군 단성면 윤리 332 외 1필지
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문화재에서 125m

○ 사업내용 : 단독주택 신축

| 구분 | 1차('14.09) | 2차('14.11) | 허가('15.02) | 변경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|---|----|
| 동수 | 5동 | 2동 | 1동 | 1동 | |
| 건축면적 (연면적) | 173.56㎡ (286.04㎡) (가동 55.08㎡, 나~마동 31.42㎡) | 110.37㎡ (가동 76.95㎡, 나동 33.42㎡) | 76.95㎡ | 97.1㎡ | |
| 구조 및 층수 (최고높이) | 지상2층 최고높이 7.39m 경량철골조 | 지상1층 최고높이 6.23m 경량철골조, 경사지붕 | 지상1층 최고높이 5.38m 경량철골조, 경사지붕 | 지상1층 최고높이 5.86m 경량철골조, 경사지붕 | |

라. 의결사항

- 부결
 - 역사문화환경 저해
- 의결정족사항
 - 출석 6명 / 부결 6명

35. 완주 송광사 대응전 주변 향로전 건립

가. 제안사항

전북 완주시 소재 보물 「완주 송광사 대응전」 주변에 향로전을 건립하기 위하여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에 향로전을 건립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-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.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송광사 주지
- (2) 대상문화재 : 완주 송광사 대응전
 - 소재지 :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255-26
 - 지정일 : 1996. 05. 29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위치 :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255-26
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보호구역 내임
 - 사업내용 : 향로전 건립(기존 종무소 철거)
 - 건축면적 : 85.05㎡
 - 층수 및 구조 : 지상1층, 한식목구조, 5량가, 팔작지붕

라. 의결사항

- 부결
 - 역사문화환경 저해

○ 의결정족사항

- 출석 6명 / 부결 6명

36. 국가지정문화재(국보·보물)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

가. 제안사항

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운영함에 있어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정하고자 허용기준 조정(안)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(안)의 타당성 및 합리성 등에 대하여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임.
 - 동 사항은 2015년 건축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(2015.04.16)에서 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('15.04.30~05.19) 동안 별도의견 없음

다. 주요내용

(1) 예고내용(1건)

| 지역 | 유형 | 지정번호 | 문화재명 | 내용 및 사유 |
|----|----|------|------------|---|
| 강원 | 보물 | 1336 | 고성 건봉사 능파교 | 보호구역 확대지정에 따름 (1구역 일부와 추가되는 부분을 2구역으로 함) |

라. 검토의견

- 예고기간 동안 별도의견이 없어 예고대로 고시함.

마. 의결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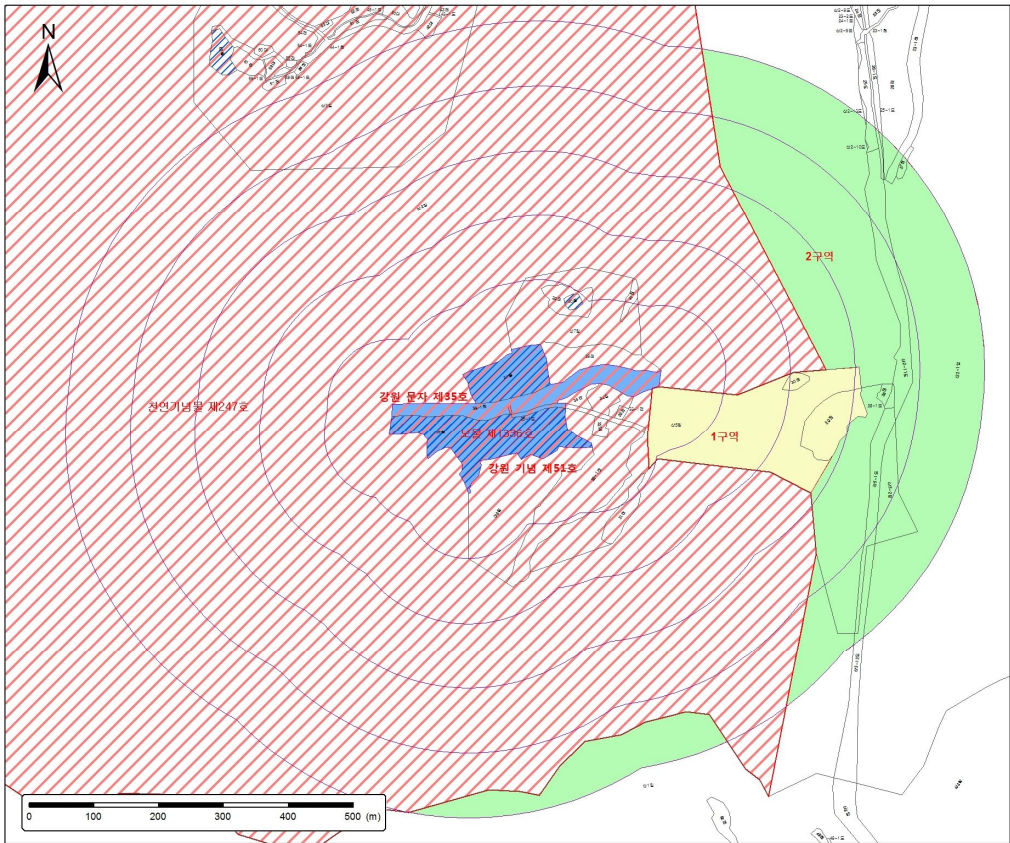
- 원안가결
- 의결정족사항
 - 출석 6명 / 원안가결 6명

붙임 :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내용 및 도면 1부.

<붙임>

고성 건봉사 능파교

| 구 분 | 허 용 기 준 | | 비 고 |
|-------|--|---------------|-----|
| | 평지붕 | 경사지붕(3:10 이상) | |
| 제1구역 | ○ 개별심의 | | |
| 제2구역 | ○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| | |
| 공통 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 ○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. 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 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 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. ○ 경사지를 성·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 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 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| | |



국가지정문화재 주변
현상변경허용기준

보물 제1336호
고성 건봉사 능파교

강원도 고성군
거진읍 냉천리 38-1

범례

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| 국가지정 문화재 |
| | 국가지정 보호구역 |
| | 국가지정 문화재/보호구역 |
| | 시도지정 문화재/보호구역 |
| | 연속지적 |
| | 100 ~ 500(m) |
| [허용기준구역] | |
| | 1구역 |
| | 2구역 |

축척 1:5,0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【검토사항】

안건번호 건축 2015-06-037

37. 국가지정문화재(국보·보물)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(안) 검토

가. 제안사항

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운영함에 있어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정하고자 허용기준 조정(안)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(안)의 타당성 및 합리성 등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.

다. 주요내용

(1) 추진경위

- 지방자치단체(청도군)에서 도시계획지구 내 주거, 상업, 공업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용 제외 요청

(2) 조정 대상 문화재(1개)

| 연번 | 유형 | 지정번호 | 문화재명 | 내용 및 사유 |
|----|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보물 | 113 | 청도 봉기리 삼층석탑 | 주거, 상업, 공업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용 제외 |

(3) 향후 계획

- 건축분과문화재위원회 검토 후 결과에 따라 관보에 예고 및 고시

라. 의결사항

○ 조건부가결

- 도 조례에 의해 허용기준에서 제외되는 부분의 하부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구역으로 설정

○ 의결정족사항

- 출석 6명 / 조건부가결 6명

첨부 : 국가지정문화재(국보·보물)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내용

[첨부]

청도 봉기리 삼층석탑

가. 문화재 개요

- 지정 별 : 보물 제113호
- 소재지 : 경북 청도군 풍각면 봉기리 719-5번지
- 지정 일 : 1963. 01. 21.

나. 검토의견

-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26조의2(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)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 중 주거, 상업, 공업지역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까지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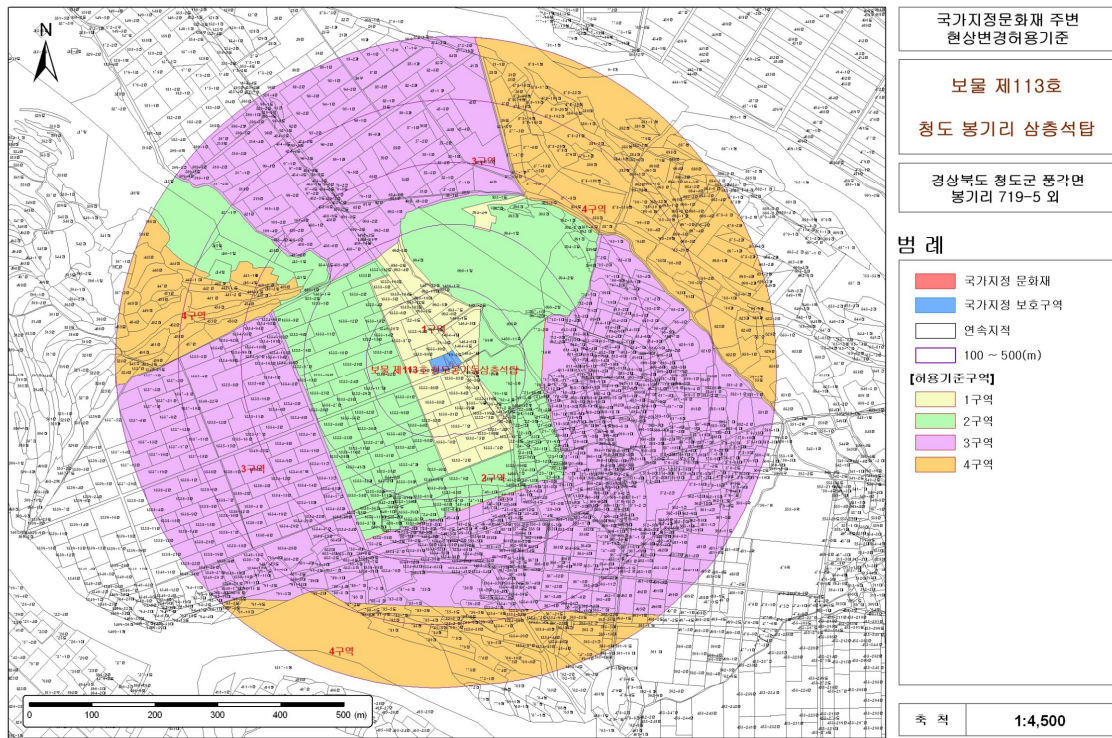
【 당 초 】

| 구 분 | 허 용 기 준 | | 비 고 |
|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| 평지붕 | 경사지붕(3:10 이상) | |
| 제1구역 | ○ 원지형 보존 | | |
| 제2구역 | ○ 최고높이 5m(1층) 이하 | ○ 최고높이 7.5m(1층) 이하 | 주거시설 |
| 제3구역 | ○ 최고높이 8m(2층) 이하 | ○ 최고높이 12m(2층) 이하 |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|
| 제4구역 | ○ 최고높이 8m(2층) 이하 | ○ 최고높이 12m(2층) 이하 | 주거, 상업, 공장, 근린생활시설 |
| 공통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 ○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. 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(2층), 경사지붕 12m(2층) 이하인 구역에 한함) 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 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. ○ 경사지를 성·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 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 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| | |

【 변 경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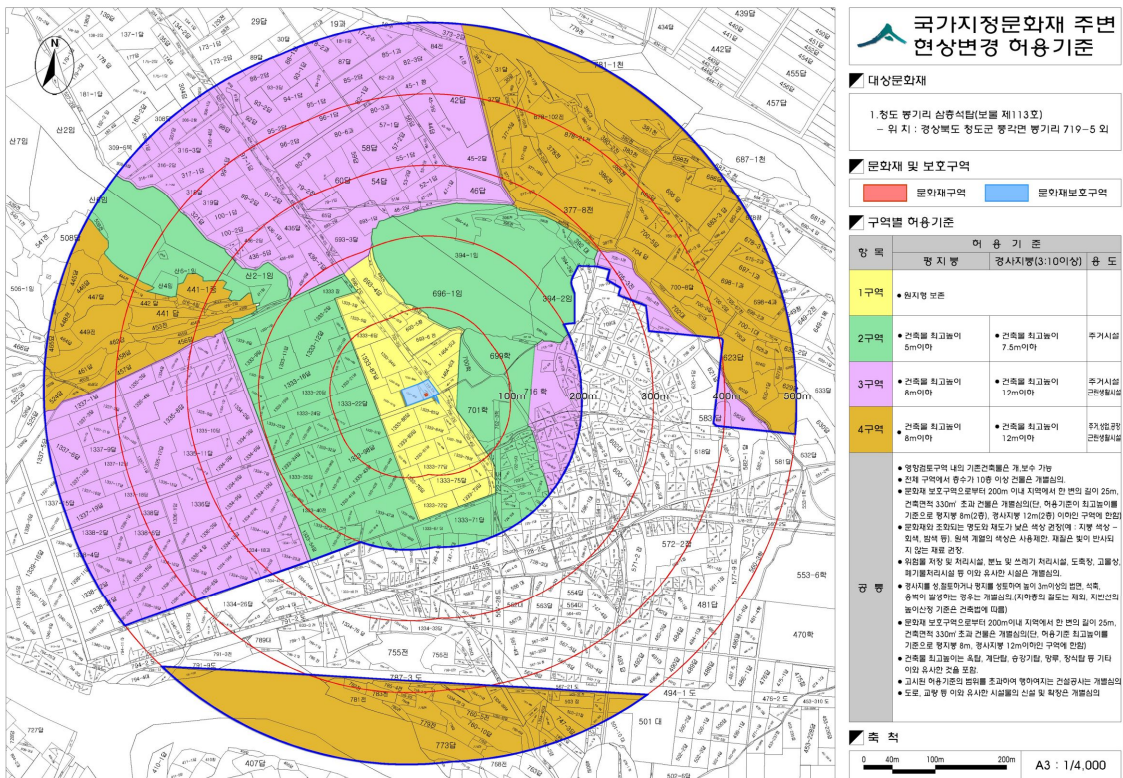
| 구 분 | 허 용 기 준 | | 비 고 |
|------|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| 평지붕 | 경사지붕(3:10 이상) | |
| 제1구역 | ○ 개별심의 | | |
| 제2구역 | ○ 최고높이 5m 이하 | ○ 최고높이 7.5m 이하 | 주거시설 |
| 제3구역 | ○ 최고높이 8m 이하 | ○ 최고높이 12m 이하 |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|
| 제4구역 | ○ 최고높이 8m 이하 | ○ 최고높이 12m 이하 | 주거, 상업, 공장, 근린생활시설 |
| 공통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 ○ 기타사항 동일 | | |

【 당 초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중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【 변 경 】



※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【보고사항】

안건번호 건축 2015-06-038

38.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

가. 보고사항

경기 하남시 소재 보물 「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」 주변 수종 갱신 현상변경 허가 등 4건에 대하여 자체검토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허가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.

나. 처리내용

| 문화재명 | 소재지 (신청인) | 사업내용 | 검토의견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소 계 | | 4건 | 허가 2건 변경허가 2건 | |
|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 좌상 | 경기 하남시 (○○○) | ○수종갱신 - 내용 : 밤나무 벌채 후 감나무 및 대추나무 식재 - 사업면적 : 5,443㎡ | 허 가 | '15.06.16 |
| 안성 청룡사 대웅전 | 경기 안성시 (안성시장) | ○임도 및 배수로 정비 - 총 사업면적 : 154㎡ - 임도 정비 (콘크리트포장 깨기 및 복구) · L=29m, B=3m, T=20cm - 배수로 정비 · U형플류관(600×600)=26m | 허 가 | '15.06.16 |
|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| 경북 칠곡군 (송림사 주지) | ○담장 보수(허가사항 변경) - 위치 : 송림사 경내 - 변경사항 : 담장보수50m→51.5m | 변경허가 | '15.06.16 |

| 문화재명 | 소재지 (신청인) | 사업내용 | 검토의견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------|-----------|
|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 | 경남 창녕군 (○○○) | ○ 농막설치(변경허가) - 위치 :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295 - 내용 : 농막설치 - 변경내용 * 면적 : 18㎡(동일) * 구조 : 경량철골구조(동일) * 높이 : 경사지붕으로 변경함에 따른 증가 · 당초 : 2.6m · 변경 : 3.67m | 변경허가 | '15.06.16 |

다. 의결사항

- 원안접수
- 의결정족사항
 - 출석 6명 / 원안접수 6명